

의안번호	2219863
의 퇴 인	이만희의원
회 답 일	2026.7.22.
추계번호	26B3559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 시·도지사는 직접 허가한 시설에 한정한다)는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u>다만, 시·도지사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또는 검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동물원,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족관에 한정한다)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도 요청하여야 한다.</u> (제1항)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미실시 및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2조(동물원 및 수족관에 대한 검사 등)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¹⁾의 위반사항과

1) 제15조(금지행위)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유동물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의 학대행위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의 학대행위
3. 보유동물을 해당 동물원 또는 수족관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제8조에 따라 허가받은 다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전시하는 경우
 - 나. 학술 연구 또는 교육 등 공익적 목적으로 이동하여 전시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해양수산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 또는 검사를 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입 또는 검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임

-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 제22조에 따라 보유동물에 대한 시설·장비 등의 실태 및 관리 실태 등을 전문적으로 검사하기 위해서 법 제12조²⁾에 따른 검사관이 동행하고 있으며, 동행 시 검사관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참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동물원에 대한 지도·점검은 42회 실시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수족관에 대한 지도·점검 횟수에 관한 별도의 통계자료를 관리하고 있지 않음

- 개정안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무원 및 검사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검사수당 지급에 따른 국가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검사 횟수 및 검사관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개정안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보유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 공포 또는 스트레스를 가하는 올라타기, 만지기, 먹이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람객에게 하게 하는 행위

제16조(안전관리) ①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와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보유동물이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2) 제12조(동물원 및 수족관 검사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위하여 동물의 생태 및 동물복지 등과 관련된 분야의 경력 또는 학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동물원 검사관 또는 수족관 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동물원 및 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제8조제5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2. 제22조에 따른 동물원 또는 수족관에 대한 검사 지원

3. 그 밖에 동물원 또는 수족관 사육환경의 적정성 등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장우윤	예승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3735	jangwy93@assembly.go.kr